

경남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중소기업정책 종합정보지입니다.

2022년  
3월호

# 이 달의 중소기업 지원정보



본 자료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목 차

## 1. 중소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접수 (3 분기 계속, 4 분기 추가) .....	1
② 2 차 방역지원금 접수 .....	3
③ 소상공인 희망대출 용자 접수 .....	4
④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용자 .....	5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직접대출) 시행 .....	6
⑥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7
⑦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공고 .....	8
⑧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 K-ETA 운영 .....	9
⑨ 코로나 19 관련기업 관계자 입국 격리면제 지원 .....	12
⑩ 중소기업 애로상담 및 전문가 현장클리닉 지원 .....	14
⑪ 기업 규제애로 상담 및 해소 지원 .....	15
⑫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	15

## 2.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	16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18
③ 고용유지지원금 .....	19
④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21
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22
⑥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23
⑦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제) .....	24
⑧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25
⑨ 고령자고용지원금 .....	26

## 3.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① 구조혁신 지원사업 .....	27
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28
③ 내일채움공제 .....	29
④ 기업인력 애로센터 .....	30

# 목 차

##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①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	31
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	32
③ 소상공인 2 차 방역지원금 .....	33

## 5. 기술보증기금 경남울산지역본부

① 혁신창업보증 .....	34
② 혁신성장기업보증 .....	35
③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	35
④ 청년창업기업보증 .....	36
⑤ 클린플러스보증 .....	36
⑥ 원클릭보증 .....	37

## 6.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

① ESG 경영 보증 우대제도(ESG 경영 역량평가 보증) 도입 .....	38
② 초장기 자동연장 대출보증 시행 .....	39

## 7. (재)경남테크노파크

① 2022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수혜기업 모집 .....	40
② 2022 년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2 차 기업지원 모집 .....	42
③ 글로벌 IT 시장개척단 온라인 화상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	45

## 8.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① 2022 CORN 프로젝트 액셀러레이팅 참여자 모집 .....	46
② 2022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상품 추천 기업 모집 .....	48

## 9. 경남신용보증재단

① 경상남도 일시멈춤 특별보증 .....	49
②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	50
③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51
④ 경상남도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보증 .....	52
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53

# 목 차

## 10. KOTRA, 경남지원단

- ① 서유럽 미래모빌리티 무역사절단 ..... 54
- ② 중국 미래차 자동차부품 온라인 무역사절단 ..... 54

## 11. 경남지식재산센터

- ①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 55
- ②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 56

## 12.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 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시설설비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 ..... 57
- ② e 경남몰 운영 ..... 58
- ③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 59
- ④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이음사업 ..... 60
- ⑤ 고졸자-선도기업간 희망사다리 일자리사업 ..... 61
- ⑥ 2022년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 ..... 62
- ⑦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사업 ..... 63

## 13. 창원산업진흥원

- ①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 64
- ② 소재부품장비 핵심부리기술 육성 지원사업 ..... 65
- ③ 2022년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66
- ④ 2022년 제조공정개선 지원사업 ..... 67
- ⑤ 방산중소기업 기술강화 지원사업 ..... 68
- ⑥ 항공부품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69
- ⑦ 첨단(경량)소재 기업육성 사업 ..... 70
- ⑧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 71
- ⑨ 수출강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 72
- ⑩ 2022년 해외마케팅 개별 지원사업 ..... 73

# 1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접수 (3분기 계속, 4분기 추가)

### 1 손실보상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 □ 기업규모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경영애로 극복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소기업에 손실보상 집중 필요
- 손실보상을 소상공인법으로 규정한 입법취지 및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 □ 방역조치 이행기간 : 2021년 7월 7일 ~ 2021년 12월 31일

- '21년 3분기분 손실보상, 손실보상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된 날(21.7.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 (부칙)

#### □ 방역조치 :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인원제한(4분기만 해당)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4

#### □ 손실발생 : 경영상 심각한 손실

-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영업 손실 발생

## 2 손실보상 산식 및 지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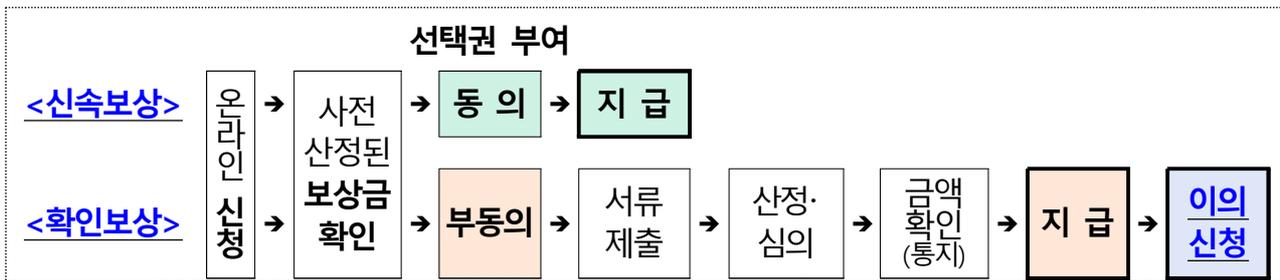
### 1. 산식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 손실보상금 산식(안) >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의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2. 신청 및 지급절차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 신청·지급



## 3 문의 및 안내

- (새부내용) “[소상공인손실보상.kr](http://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검색
- (전화 문의) “[☎1533-3300](tel:1533-33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114.kr](http://손실보상114.kr)”
  - 상담원 : 평일 09 ~ 18시 운영
  - 챗봇상담 : 24시간 운영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
  - “[☎055-285-6530](tel:055-285-6530)” (평일 09 ~ 18시 운영)

## 2 | 2차 방역지원금 접수

(사업개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

(지원대상) 방역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①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 추가

###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그 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③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 (간이과세자에 한정)

(지원규모) 약 10조원 규모,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

(지원내용) 방역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300만원 지급

(신청기한) 2022. 2. 23(수) ~ 3. 18(금)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세부내용) 콜센터(☎1533-0100)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확인가능

### 3 | 소상공인 희망대출 용자 접수

□ (사업목적)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 지원

□ (지원대상) ①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② 저신용 ③ 소상공인

①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용자'(21.11.29 ~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 >

■ 유형

1.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2.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소기업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방역지원금 발표일인 12.16일 전일)

②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중신용 이상 업체는 지신보 특례보증(2~5등급), 시중은행 이차보전(1등급)으로 별도 지원

\*\* 특례보증 및 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원업종은 동사업과 같지 않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

③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신청, 소상공인이 아닌경우

□ (용자조건) 용자규모 : 1.4조원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

□ (접수기간) '22. 1. 3(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 (문의·상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

## 4 |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용자

- **(사업목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용자 지원
  - 최근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공연업 등의 소상공인에게도 일상회복 특별용자 확대 지원
- **(지원대상)**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 ①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 ② (매출감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 적용
    - 비교기간 대비 '21.7~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 ('20.8. 이전개업자) '19.7~9월 또는 '20.7~9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 ('20.9.~'21.5. 개업자) '21.4~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용자조건)**
  - (규모·한도) 2조원(10만 업체 x 최대 2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접수기간)** '21. 11. 29(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 **(문의·상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

**5****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직접대출) 시행**

- **(지원목적)** 코로나19 피해 취약 채무자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에 대한 만기연장 추진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 까지 기간 중 원금 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대출사고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 한 경우 지원
  
- **(지원방식)** 신청을 받아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 분 부터 6개월간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을 적용
  -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재약정 한 경우 다음달부터 6개월간 연장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만기연장 후에도 부담없이 중도상환 가능
  
- **(신청·접수)**
  - (현장신청) 소진공 센터 현장접수
  -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신청시기)** '21. 9. 27(월) ~ '22. 3. 31(목)
  
- **(문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6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사업개요)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신청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공통적으로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하나, 시장대응형/소부장일반-재도약과제는 업력 7년 이상,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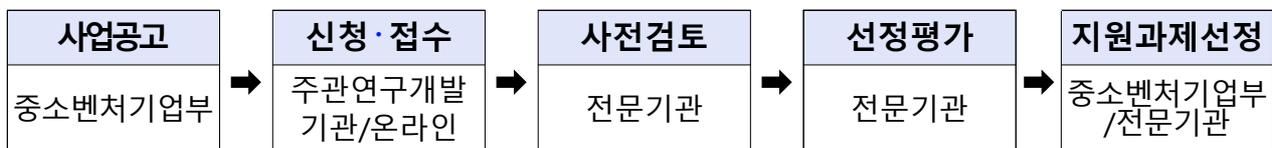
\*\* 세부사업별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최대 4년, 20억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80% 이내	자유공모(품목지정)
시장확대형 소부장전략	최대 2년, 6억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최대 2년, 5억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 (지원규모) 1,745억원, 963개 과제 지원(신규과제)

□ (선정절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한) 2022년 1월 17일(월) ~ 4월 25일(월)까지

\* 세부사업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문의처)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055-268-2551)

## 7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공고

- (사업개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모집구분) 일반 비즈쿨 20개 내외

<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 구분 >

구분	역할
일반비즈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쿨 프로그램 운영</li> <li>· 사업비 정산, 중간 및 최종보고서 제출</li> <li>·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li> </ul>
거점비즈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비즈쿨 역할 및 지역 내 비즈쿨 운영학교, 관내 학교, 기관과 연합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li> </ul> <p>* 거점비즈쿨은 2022년 신규 모집 T.O 없음</p>

- (지원내용) 학교급별 운영예산 지원(5백만원 ~ 9백만원 내외)

<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 지원예산(안) >

구분	내용	
일반 비즈쿨	초등, 학교 밖 센터	5백만원
	중등	7백만원
	고등	9백만원

\* 신청학교 수에 따라 지원예산 및 선정학교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한) '22. 1. 26.(수) ~ 3. 11.(금) 16:00까지
- (신청방법) K-startup ([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및 신청
- (세부내용) 2022년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 모집공고 ([Click](#))
- (문의처)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055-268-2525)

## □ 적용대상

- (국가) 무사증입국이 정지된 63개 국가(별첨 1) 국민 중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49개국

- ⇒ 상기국가는 초청기업 또는 해당외국인이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www.k-eta.go.kr](http://www.k-eta.go.kr)) 또는 모바일앱(K-ETA)에서 직접 K-ETA 신청

- (대상자)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비자발급 대상자

\* (C-3 대상)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 지도 등 영리목적 등을 위한 단기취업(C-4) 대상자는 K-ETA 신청 불가

## □ 준비서류 및 기간

- ① (준비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② 신청 엑셀 양식, ③ 초청외국인 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④ 초청장 또는 항공권

- ② (신청기간) 입국 10일전 신청(토, 일, 공휴일 불포함)

※ 기업인 격리면제는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에 별도 신청 법무부 최종심사에서 K-ETA 발급이 불승인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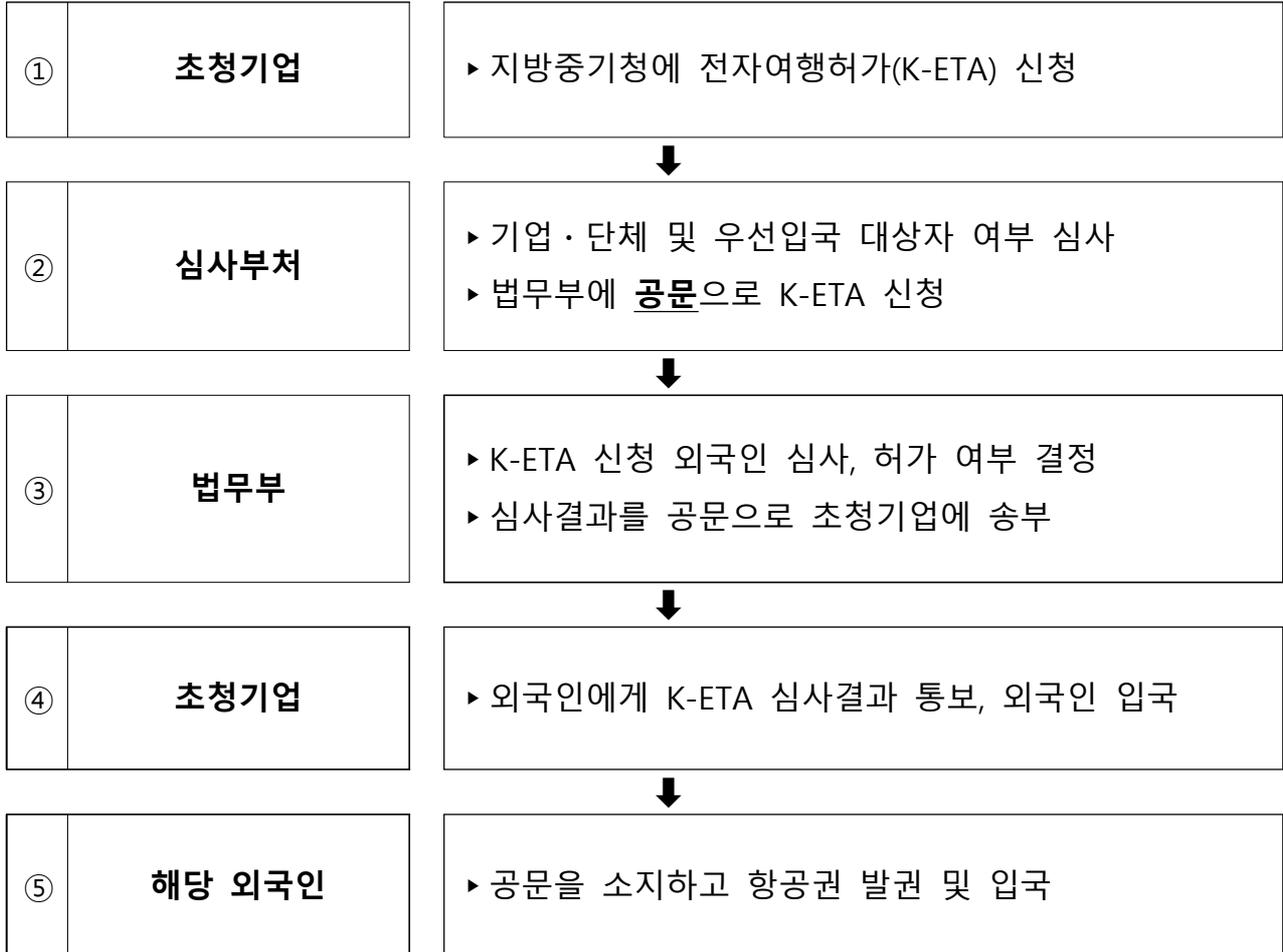
**참고 1****중기부에 K-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63개국)**

총 63개국	
<b>아시아</b> (17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스라엘, 일본, 카자흐스탄, 카타르, 쿠웨이트, 타이완, 태국, 터키, 홍콩
<b>미주</b> (23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캐나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b>유럽</b> (4개국)	러시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b>오세아니아</b> (11개국)	나우르, 뉴질랜드, 미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b>아프리카</b> (8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이셸, 에스와티니, 튀니지

## 참고 2

## 관련 참고자료

### 1 신청 및 허가 절차



### 2 심사부처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중기부(그외 중소기업)

□ (문의처) 055-268-2544~2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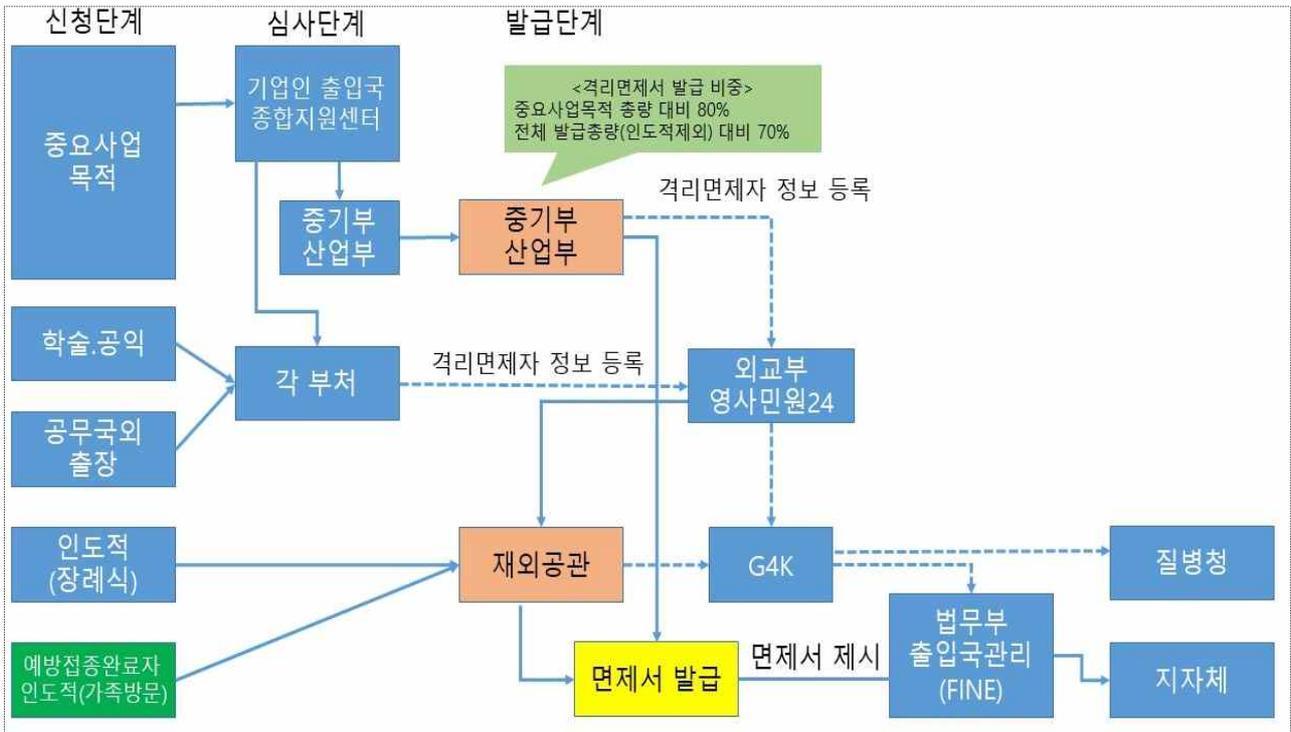
## 9 | 코로나19 관련기업 관계자 입국 격리면제 지원

- **(사업개요)**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 심사 후 격리면제서 발급
- **(발급대상)** 아래 사증을 소지한 우리 국민 및 외국인
  - 중요한 사업상 목적
    -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 학술·공익적 목적 및 인도적 목적의 경우 전체 사증 가능
- **(발급기준)**
  -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21.12.2~)
    -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로 모든 국가를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운영(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 입국 제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2.3. 기준)

① 중요사업상 목적	대표·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및 설비설치 등 현장 필수업무로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③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7일 이내)
④ 공무 국외출장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등

## □ (발급절차)



## □ (신청시점)

- 2021. 7. 1(목)부터 신청 가능하며, 공관 사정에 따라 심사 및 격리 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국내 입국 예정일로부터 2주 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접수

\* 단, 인도적 목적(직계 존·비속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에 한해 사전 신청 접수 가능

## □ (신청방법)

-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btsc.or.kr](http://btsc.or.kr))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 학술·공익적 목적의 경우 소관부처를 통하여 신청
-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직접신청 또는 소관부처를 통하여 신청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직계 존·비속 방문)의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 단,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 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 가능

## □ (문의처) 1566-8110, 02-6000-7037/70

- **(사업개요)** 경영·기술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창업·벤처전문가, 마케팅·수출입 전문가 등 전문인력 Pool을 구성하여,
  - 중소기업의 경영·기술 애로를 상시 상담·해결해 드리는 “전문가 자문서비스”
- **(지원대상)**
  - 상담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 각종 경영·기술 장애가 있는 자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지원내용)**
  - 상담 : 비즈니스지원단(분야별 전문가)이 기업의 경영·기술애로를 무료상담 지원
  - 현장클리닉 :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최대 7일)에 애로해결 지원(2월 중 공고 예정)
- **(지원조건)**
  - 상담은 무료, 현장클리닉은 1일 35만원(정부 80% 지원, 기업부담 20%)
    - \* 단,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은 기업부담금 면제
    - \* 현장클리닉 자문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연말 세금환급 가능)
- **(신청·접수)**
  - 전화 : 국번없이 1357, (경남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055-268-2546~8
  - 인터넷 : <http://www.smes.go.kr/bizlink>
  - 방문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1층 고객지원실 내)

## 11 기업 규제·애로 상담 및 해소 지원

- **(지원내용)**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선 수시 상담 및 접수
  - 일반적인 애로사항은 유선 또는 현장방문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처(기관 등)로 규제개선 요구
- **(신청방법)** 전화(055-268-2523), 전자우편([woong2a@korea.kr](mailto:woong2a@korea.kr)) 등

## 12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 **(지원내용)**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상담 및 안내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담 변호사의 법률상담, 법률자문 지원, 시정권고·명령 등

절 차	내 용
<b>불공정거래 신고·접수</b> (피해기업 → 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유선, 우편, 신고센터 방문 접수 등</li> <li>■ (온라인)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a href="https://smes.go.kr/poll">https://smes.go.kr/poll</a>)</li> </ul>
↓	
<b>신고사실 검토</b> (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생협력법 위반사실 검토</li> </ul>
↓	
<b>불공정행위 여부 확인</b> (신고센터 → 위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유선확인(불공정 행위여부 확인 및 당사자 간 중재)</li> <li>■ (2차) 위탁기업 현장방문 조사(불공정 행위 관련 자료제출 요구확인 등)</li> </ul> ※ (법률자문 필요 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자문변호사와 상담 연결
↓	
<b>수위탁 분쟁조정</b> (이해당사자 → 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8조(분쟁의 조정)에 따라 수위탁기업에서 요청 시</li> </ul>
↓	
<b>시정권고·명령</b> (신고센터 → 위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권고·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li> </ul>

- **(신청방법)** 전화(055-268-2561), 전자우편([forever@korea.kr](mailto:forever@korea.kr)), 온라인 신고(<https://smes.go.kr/poll>) 등

## 2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 1

### 청년내일채움공제

#### < 2022년도 주요 변경내용 >

- ① 기업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수)에 따른 기업부담금 변경  
**30인 미만**: 면제, **30~49인**: 20%(매월 2.5만원),  
**50~199인**: 50%(매월 6.25만원), **200인 이상**: 100%(매월 12.5만원)
- ② 5인 미만 병·의원 종사자 가입 허용
- ③ 기업 귀책 중도해지의 경우 재가입 기간 완화  
(현행) 6개월 이내 취업→ **(개정) 12개월 이내 취업**
- ④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중도해지사 환급금 조정  
(현행)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진 환급금 지급→ **(개정) 중도해지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사업개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 지원

\* 동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조기 예산소진 등으로 사업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가입대상)**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
  - **(청년)** ①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34세의 청년 ② 고용보험 최초 취득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

❖ **(참여제한)**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초과자,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자,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중복 등

- **(기업)** 해당 청년 정규직 취업일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은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참여제한)**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소비·향락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법인·단체, 외국법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주 등

□ **(가입 및 취소)**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 계약취소는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기업 또는 청년이 신청

□ **(지원방식)**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

-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납입(매월 12.5만원)
- (기업→청년) 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 적립
  - \* 기업의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있음

❖ **(기업 부담금)**

30인 미만 기업: 면제	30~49인 기업: 20%(매월 2.5만원)
50~199인 기업: 50%(매월 6.25만원)	200인 이상: 100%(매월 12.5만원)

-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2년간 5회)

⇒ 중소기업 등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 시 1,200만원 마련

□ **(공제부금 적립)**

- (청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300만원** 적립
  - \* 청년 본인 계좌에서 **매월 12.5만원**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 (정부) 취업지원금을 2년간 **600만원** 적립(가상계좌에 적립)

적립주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80만원	120만원	120만원	140만원	140만원

- (기업) 채용유지지원금(2년간 **300만원**) 적립(가상계좌에 적립)

기업규모 (피보험자수)	자부담율 (기업자부담금/적립방식)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인 미만	면제(0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30인~49인	20%(60만, 월 2.5만)	60만원	60만원	60만원	60만원
50인~199인	50%(150만, 월 6.25만)	37.5만원	37.5만원	37.5만원	37.5만원
200인 이상	100%(300만, 월 12.5만)	0원	0원	0원	0원

□ **(지원절차)** ❶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www.work.go.kr/youngtomorrow](http://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참여신청(기업→청년) ⇒ ❷ 약정체결 및 선발처리(운영기관) ⇒ 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청년·기업)·승인

□ (문의처)

운영기관명	소재지	전화
(사)경남경영자총협회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28번길 6	055-263-0282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055-295-2360
(주)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3층	055-261-3264
창원상공회의소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	055-210-3091

## 2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사업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직장 적응능력·직무향상을 지원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종료 후 채용가능성 제고하는 프로그램

□ (신청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신청 직전 월말 기준)

\*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일부 사유에 해당 시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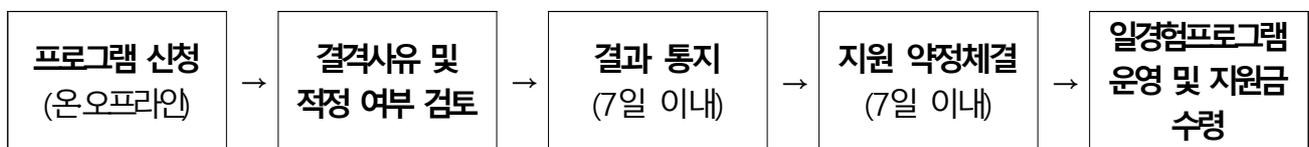
- (기업별) 벤처기업, 인증사회적기업, 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업종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 (지원내용)

유형	지원기간	지원내용	모집한도*
체험형	· 최대 30일(사업장 휴무일 제외) · 1일 3~4시간(1주15~20시간)이내 원칙	· 1인당 멘토링 수당(1인당 10만원)	40% 이하
인턴형	· 1개월~3개월 · 1일 8시간(1주30~40시간) 준수	· 1인당 인건비 최대 월 1,914,440원 · 1인 멘토링 수당(1인당 10만원)	40% 이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직전 월말 기준) 기준

□ (참여절차)



□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http://www.kua.go.kr)) 온라인 신청,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처) 운영기관 (주)제이엠커리어창원지사(☎055-713-8825)  
 (사)경남산업기술진흥법인 창원마산사무소(☎055-252-1060)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055-239-5372)  
 마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055-259-1575)

### 3 고용유지지원금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 불가피 사업주로 인정(~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 해제 시까지)

(지원요건)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① 휴업 :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 단축

- ② 휴직 :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① 무급휴업 : ① 30일 이상 실시, ②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③ 노동위원회 승인

\* ▲ 50% 이상 (19인 이하), ▲ 10명 이상 (99명 이하), ▲ 10% 이상 (100명 ~ 999명), ▲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② 무급휴직 : ① 30일 이상 실시, ②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③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실시, ④ 근로자대표 합의

\* ▲ 10명 이상(99명 이하) ▲ 10% 이상(100명 ~ 999명) ▲ 100명 이상(1,000명 이상)

\*\*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지원내용)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 업종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특별업종 고용위기 지역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관광업 `20.3.16~`22.3.31, 공연업 `21.4.1.~`22.3.31, 항공기취급업 `20.4.27~`22.3.31.

(지원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실시 하루 전까지 신고(단, 집합제한·금지업종은 30일 이내 신고 가능)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 □ (지원제외)

- 고용유지조치 기간 + 1개월간 당해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 감원방지기간 내 폐업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 부지급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 체납된 경우
-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고용보험 미가입자
  - ②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 ③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타사 취업 또는 일용근로한 자
  - ④ 계획 신고 당시 해고 예고된 자 및 퇴직 예정자
  - ⑤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동거친족
- 당해 사업장 입사(고용보험 가입)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세부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시행공고\(Cl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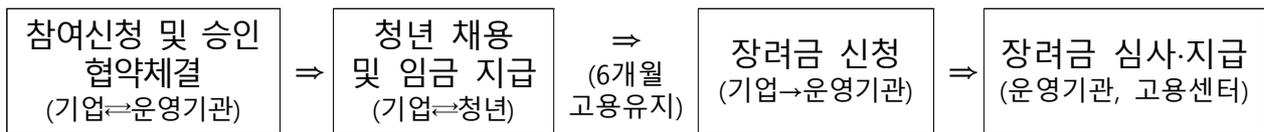
##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개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장려금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고용위기지역(진해구)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청년: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 \* 단,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절차)** 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 **(참여신청)**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http://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30명(수도권: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 **(신청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종료된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최초 신청, 2~4차는 다음 달부터 2개월 단위로 신청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사업장 소재지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5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사업개요)** 어려운 청년고용상황을 타개하고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해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1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

□ **(지원대상)** ①'20.12월~'21.12월 중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②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③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5인 이상(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 단,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 월 임금 당해연도 최저임금('20년-1,795,310원, '21년-1,822,480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최초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일 기준 직전연도 연평균 피보험자수보다 매월 말일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 증가

<예시> '18년 성립 사업장에서 '20.12월(A), '21.1월(B), '21.2월(C)에 청년을 1명씩 채용한 경우, 19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A에 대해 최초 지원받게 되면, B,C도 19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증가 여부 판단

\*\*\* 단, 전년도 연평균 인원 5인 미만 사업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참여 가능

① 연평균('21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벤처기업육성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인 경우**

②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이더라도,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경우

③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이더라도, '21년 중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 <예산범위 내>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명 \* 지원대상 중도 퇴사 시 대체 불가

□ **(신청기한)**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날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사업장 소재지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6 워라벨일자리장려금

- **(사업개요)**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 대규모기업 지원 제외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폐지('22.1.1.시행)

☞ (개정사항 적용) '22.1.1.이후의 지원 대상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원대상 기간이 '21.7.1~'22.6.30.인 경우 '21.7.1~'21.12.31.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며, '22.1월분부터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음

- **(지원조건)** ①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②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③ 초과근로일수와 출퇴근기록 누락일수 합산 월 3일 이하 ④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 및 대상자 본인이 직접 기록

- **(지원수준)**

지원내용	1개월 지급액	최대 지원 한도	지원대상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24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36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20만원 이상 보전시에만 지원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최소 1개월 이상)에 대하여 지원
- **(지원한도)** 1년간 지원인원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10인 미만 3명)  
※ 최초 지원금 신청일 이후 지원대상 근로자를 변경할 수 없음
- **(신청방법)** 고용보험 시스템(<http://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원칙),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우편 또는 방문신청
- **(세부내용)**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시행공고\(Click\)](#)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사업장 소재지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7

일 ·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제)

- (사업개요) 유연근무제\* 활용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 심사·승인 ②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 전자·기계적 방식\* 출퇴근 관리 ④ 출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퇴근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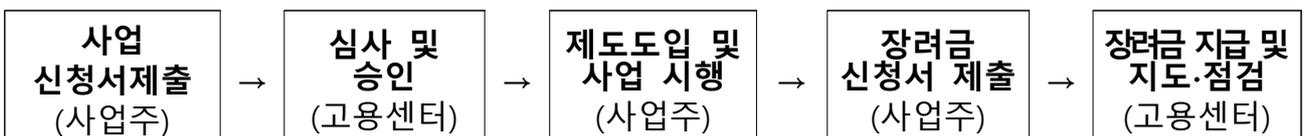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간 최대 360만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월 6일~11일 활용	월 12일 이상 활용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30만원	360만원
선택근무제	30만원		360만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최대 70명 지원

- (지원절차) <공모형>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사업장 소재지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8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사업개요)**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년 고용 촉진 및 고용연장 도모
- (지원요건)** 정년을 시행 중인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 ①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자를 재고용 (재고용)
    - 재고용의 경우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원 일률적 재고용이 원칙
- (지원수준)**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근로자별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10인 이하 사업장 3명)
- (지원제외)**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입사하여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 제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 (신청방법)** 고용보험 시스템(<http://www/ei.go.kr>)에서 온라인, 사업체 소재지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우편 또는 방문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사업장 소재지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사업개요)** 급격한 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취업 촉진을 위해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 단,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의 시작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② (고령자 수 증가)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 신규 채용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1년 초과
    - \*\* 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지원수준)** “분기별 지원 대상 고령자의 수 × 30만원” 을 지원금 최초 지급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최대 한도 30명)
  - ※ 월평균 피보험자수 10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
- **(지원제외)**
  - 사업적용기간인 1년 미만인 사업장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근로자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 제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및 최저임금 미만인 자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사업장 소재지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 세부 사업개요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사업·노동·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신청방법)** 중진공 구조혁신 홈페이지(3t.kosmes.or.kr)를 통해 신청
- **(신청기간)** 2022. 2. 16. ~ 2022. 12. 31.(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진단 800개사, 사업·노동·디지털전환 컨설팅 1,100개사  
\* 진단, 컨설팅의 **기업 부담금 없음**
- **(지원내용)** 구조혁신 유형별(사업·노동·디지털전환) 전문가를 활용하여 진단 및 컨설팅 수행, 정부 지원사업 연계
  - **(진단)**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현 수준, 컨설팅 방향 제시  
\*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컨설팅 실시(0~3개 분야)
  - **(컨설팅)** 사업·노동·디지털전환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법인과 연계하여 심층 컨설팅 지원(컨설팅 분야별 중복지원 가능)

구분	분야별 세부내용
사업전환	■ 기업역량 및 재무진단, 사업모델 전환, 원가·물류 프로세스혁신 등
노동전환 고용안정	■ 경영 및 생산조직 재설계, 인력 재배치 및 효율화, 노사관계 등
디지털전환	■ 디지털화 수준 및 내부역량 강화, 단계별 개선전략 및 실행과제 등

- **(연계지원)** 중기부, 고용부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

구분	연계지원 세부내용
사업전환 추진기업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사업전환자금 용자 ■ 정부 지원사업 가점 연계(R&D, 스마트공장, 공공입찰 등)
노동전환 고용안정 추진기업	■ 사업전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디지털전환 추진기업	■ 비대면 바우처 지원사업 ■ 위기지역 중소기업 스케일업 R&D

## 2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성 공제사업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부동산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제외)
  - \*\* 청년근로자 :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군복무기간 추가인정, 대표자 특수관계인 제외)
-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시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기업) 5년간 1,200만원 이상 적립(월 최소 20만원)
  - (청년) 5년간 720만원 이상 적립(월 최소 12만원)
  - (정부)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 적립)
- (기업혜택)** 기업납입금에 대해 손비인정, 세제지원, 우대가점 등 적용
  - (손비인정)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제지원) 기업납입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발생액 25%)
  - (우대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 시 우대
- (신청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중진공 지역본부 및 기업·신한·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 온라인 신청
- (세부내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고문 보기\(Click\)](#)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1588-6259)

### 3

## 내일채움공제

- (사업개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자산형성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성 공제사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기업(부동산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제외)
  - \*\* 근로자 : 직무기여도가 높은 재직자(가입인원 한도 및 자격, 경력 등 제한 없음)
- (지원내용)** 중소기업, 근로자가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시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적립방식)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근로자:기업=1:2 이상」 비율로 매월 34만원 이상, 5년간 납부
- (기업혜택)** 기업납입금에 대해 손비인정, 세제지원, 우대가점 등 적용
  - (손비인정)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제지원) 기업납입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발생액 25%)
  - (우대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 시 우대
- (신청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중진공 지역본부 및 기업·신한·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 온라인 신청
- (세부내용)** [내일채움공제 공고문 보기\(Click\)](#)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1588-6259)

## 4

## 기업인력애로센터

- (사업개요)** 구인구직, 직무역량 향상, 맞춤형인력 양성, 근무환경 개선, 인력제도 개선, 정보제공 등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인력양성사업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기업인력애로센터에 등록된 구인기업의 인력매칭, 제도개선, 직무역량 향상교육 등을 제공하는 ONE-STOP 지원체계
  - **(청년구인구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대상으로 특성화고, 전문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인력양성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상시 매칭
  - **(직무역량향상)** 중소기업연수원, 고용부 HRD-Net 등 직업훈련기관 및 민간교육기관과 연계
  - **(맞춤인력양성)** 특성화고 인력양성, 기술사관, 산학맞춤인력양성사업, 계약학과 등과 연계
  - **(근무환경개선)** 기업진단, 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근무환경 종합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 **(인력제도개선)** 법규, 제도 등 규제사항을 기업인력지원처를 통해 대정부건의
  - **(정보제공)**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인력지원 시책 연계
- (신청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중진공 지역본부 방문 신청 및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 (job.kosmes.or.kr) 온라인 신청
- (세부내용)** [기업인력애로센터 공고문 보기\(Click\)](#)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1899-3001)

## 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와 안전한 폐업으로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재창업 및 재취업으로 재기 도모
-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 지원분야에 따른 세부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지원규모)** 39,400건 (단, 지원분야에 따라 모집인원 상이함)
-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① 경영개선사업화	• 경영위기 소상공인	▪ 경영교육 + 경영진단 및 개선전략 수립 + 경영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
② 재창업사업화	• 폐업 소상공인	▪ 창업교육 + 전담 멘토링 + 재창업자금 (최대 2천만원)
③ 원스톱폐업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채무조정은 사업체대표 배우자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업정리컨설팅)</b>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li> <li>▪ <b>(법률자문)</b>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지원</li> <li>▪ <b>(채무조정)</b> 사업부채 관련 개인파산·회생 및 워크아웃 지원</li> <li>▪ <b>(점포철거비)</b>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li> </ul>
④ 재도전역량강화	• 폐업(예정)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직기초교육)</b> 취업을 위한 직무직능 탐색, 취업마인드 함양 과정, 현장 및 e러닝 교육 운영</li> <li>▪ <b>(전직특화교육)</b> 취업을 위한 직무특화 이론 및 실습 교육</li> <li>▪ <b>(사업전환교육)</b> 비과밀업종 사업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경영교육 및 기술실습 과정 운영</li> <li>▪ <b>(전직장려수당)</b>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 성공에 대한 수당 (최대 1백만원) 지급</li> </ul>

## ○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 (신청기한) '22년 1월 1일부터 ~ 연중 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 (세부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공고\)](#)
- (문의처) 1357(중소기업지원통합콜센터) 또는 각 지역 센터

## 2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 (사업개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 회복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공지사항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④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①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②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③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지원내용)** 일괄 100만원 정액지급
- (신청기한)** '22년 2월 10일 ~ 3월 4일
  - \* 방문신청 시 온라인으로 예약 후 관할 센터 방문
  - \*\* 방문신청 온라인 예약은 2.23(수) 오전 9시부터 가능
- (신청방법)**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 방문신청 예약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
- (세부내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확인지급) 시행공고
- (문의처)** 콜센터(1533-0100)

### 3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

- (사업개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 회복 지원
- (지원대상)**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지원내용)**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 (신청기한)** '22년 2월 23일 ~
  - \* 신속지급(온라인) 지원 후 3월 중 방문접수 또는 이의신청 예정
- (신청방법)**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세부내용)**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
- (문의처)** 콜센터(1533-0100)

## 5

## 기술보증기금 경남울산지역본부

## 1

## 혁신창업보증

- (사업개요)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중점지원을 통해 국가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성장 기반 조성
- (지원대상) 창업후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실제경영자가 신청기술분야 5년 이상의 대·중견기업 기술경력을 보유 또는 25년 이상의 중소기업 동업종 경력을 보유하면서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TECH밸리보증) 협약기관(대학, 연구소, 대기업) 교수,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 (인더스트리4.0퍼스트보증)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 또는 정부 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산업 영위기업
  - (스마트제조보증) 스마트 공장 도입 및 공급기업

구 분	대 상 기 업
도입 기업	(유형①)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스마트공방 포함) 보급사업 참여기업
	(유형②) 정부의 구축수준 확인제도를 통한 스마트공장구축확인 기업
	(유형③) 스마트공장 자체구축기업으로 기보의 자체구축 스마트공장 판별수준표 작성기업
	(유형④) '첫 공장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유망 제조 스타트업
공급 기업	(유형①)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유형②) 정부의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대상자금) 운전 및 시설자금
- (우대사항) 각 보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 (지원계획) '22년 11,000억원

## 2 혁신성장기업보증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및 유니콘기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중점지원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접수일 기준)
  - 고용인원수 10명 이상(고용보험가입자 기준)
  - 최근 3회계연도 중 매출성장률이 2개년 연속 20%이상
- (대상자금)** 운전 및 시설자금
- (지원계획)** '22년 3,500억원

## 3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 (사업개요)** Post-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비대면·디지털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비대면·디지털 우대보증” 신설
- (지원대상)** 비대면·디지털 분야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기업

구분	내용
비대면기업	ICT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조 생산·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한 단계 이상 감소시킨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
디지털기업	수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 분야인 D.N.A 및 ICT(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영위기업

- (우대사항)** 보증비율 90~95% 및 보증료 0.2~0.3%p 감면
- (지원계획)** 10,000억원

## 4 청년창업기업보증

- (사업개요)**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으로 청년창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

\* 실제경영자가 모두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후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 (세부내용)**

구분		청년창업기업보증	청년창업 우대보증	청년 테크스타 보증
지원대상		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창업후 5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 청년창업기업 (유관기관 추천)
대상자금		운전 및 시설자금	운전 및 시설자금	운전 및 시설자금
보증한도		제규정 이내	같은기업당 3억원 이내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다만, 클린플러스 보증 으로 지원시 같은기업당 6억원 이내
우대 사항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창업후 1년 이내 100%)	95% 부분보증 (창업후 1년 이내 100%)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같은 기업당 5억원 이내 0.3%p감면	0.3% 고정보증료율	(창업후 5년 이내) 0.3% 고정보증료율 (창업후 5~7년) 0.3%p 감면

## 5 클린플러스보증

- (사업개요)** 기업 경영활동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운영자금 집행의 편의성을 촉진하면서 보증부대출 자금사용 투명성을 확보

\* (취급가능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22.3월 예정)

- (대상자금)** 운전자금(근보증)

- (우대사항)** 부분보증 95%(5년간) 및 보증료 0.5%p 감면

## 6

## 원클릭보증

---

- (사업개요)** 빅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보증상품인 원클릭보증을 시행하여 고객의 보증지원 예측가능성 확보 및 신속 지원 시스템 마련
- (대상자금)** 운전자금
- (지원한도)** 같은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
  - \* 건별 신청한도: 1억원 이내
- (우대사항)** 100% 전액보증\* 및 보증료 0.3%p 감면
  - \* 취급 후 3년 초과 시 95%, 5년 초과 시 90% 부분보증으로 전환
- (비대면 금융지원 협약보증)** 협약은행\*의 비대면 대출과 연계
  - \* (취급가능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지원대상) 개인기업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기한) 5년(대출상환방식)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 및 영업점

## 1 ESG경영 보증 우대제도(ESG경영 역량평가 보증) 도입

- **(사업개요)** ESG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우대를 통해 정부의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고 경제 생태계 전반에 ESG 가치 확산을 추구
- **(지원대상)** 보증금액 3억원 초과 & 업력 3년 이상(재무제표 2기 이상 보유)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평가방법)**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E), 사회적 책임(S),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G)에 초점을 두고, 기업의 ESG경영 전반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 수행
- **(우대내용)** ESG경영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화된 심사체계 적용 및 우수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심사방법, 전결권 등을 우대
- **(문의처)** 인근 영업점(신용보증기금 대표번호 1588-6565) 또는 ESG금융센터(053-430-4340)

## 2 초장기 자동연장 대출보증 시행

- **(상품개요)** 단기보증과 장기보증의 장점을 결합한 보증상품으로 최초 단기보증서(만기 1년) 취급 후 상품 운용기간(초장기간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및 보증기한 연장이 자동(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품
  - 분할상환을 이행하고 보증부실이 발생하지 않는 등 일정한 조건, 채권은행이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보증기한이 자동으로 연장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대상보증	▪ 연대보증인 없는 3억원 이하 신규보증(운전자금)	시범운영 후 확대검토
상 대 처	▪ 업무협약 체결 은행(우리은행)	
운용기간	▪ 10년형(초장기)으로 운용	균등분할상환
자동연장	▪ 운용기간 내에서 채권은행이 대출기한을 연장 시 보증기한이 자동으로 연장(고객 무방문)	일정조건 충족 (분할상환 이행 등)
인센티브	▪ 보증비율(90%), 보증료율(0.2~0.5%p차감), 금리 우대 등	

□ (운용예시)

▪ 보증기한(대출기한) : 1년, ▪ 상품 운용기간 : 10년, ▪ 분할상환 : 균등분할(매년 10%), ▪ 보증비율 : 90%

	'22.01.30.	'23.01.30.	'24.01.30.	'25.01.30.	...(중략)...	'32.01.30.
	○	→ ○	→ ○	→ ○	→ ○	→ ○
은행	대출실행 (100백만원)	기한연장 (90백만원)	기한연장 (80백만원)	기한연장 (70백만원)	...(중략)...	전액상환
신보	보증실행 (90백만원)	자동연장 (81백만원)	자동연장 (72백만원)	자동연장 (63백만원)	...(중략)...	전액해지

□ (시행일자) 2022. 2. 14.

□ (문 의 처) 인근 영업점(신용보증기금 대표번호 1588-6565)

**1 2022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수혜기업 모집**

□ **(사업개요)** 경남 주력산업 침체 극복방안으로 소재·부품, 정밀기계, 전기 전자, ICT/SW 기업의 의료기기 산업으로 업종전환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업종 전환 활성화 정책을 마련, 업종 전환 가속화 및 성공률 제고

□ **(지원대상)** 다음 세가지를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기업

- ① 의료기기산업으로 업종전환/추가를 희망하는 도내기업
  - ② 의료기기산업으로 창업/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도내기업
  - ③ 21.4.1. 이후 경남으로 사업장을 이전 또는 확장한 의료기기산업 기업
- \* 이외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 **(우대사항)**

- 소재·부품, 정밀기계, 전기전자, ICT/SW 분야 제조업에서 의료기기 산업으로 업종전환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 사업화 계획(매출발생, 고용창출 포함)이 수립되어있는 과제

□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분야	수행기관	세부내용	규모	최대지원금
장비연계 기술개발 (R&D)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업종전환 기업 및 창업/이전 기업의 성공적인 의료기기산업 진입을 위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사용 가능	11건 내외	80,000천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장비연계 시제품제작 I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의료기기 분야의 신제품 출시를 목적으로 기관보유 시제품 제작장비 및 분석장비를 연계하는 시제품 제작지원 ※시제품 재료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	7건	50,000천원
장비연계 시제품제작 II	(재)경남테크노파크	·연구개발제품의 전자기적합성, 환경 및 신뢰성 등 성능평가 분석 장비연계 시제품제작 지원 ·KOLAS 인정 ※ 시제품 재료비 및 디자인비(포장디자인 제외)에 한하여 사용가능	14건	50,000천원

※ 각 수행기관별 연구시설·장비 및 KOLAS 인정 가능 항목은 [별지 제1-1호] 참조

※ **3개 지원분야 모두 경남TP,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장비 중 1건 이상 활용 필수**

□ (신청기한) 2022. 2. 9.(수) ~ 3. 3.(목) 18:00까지

□ (신청방법)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http://www.gntp.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지원사업 신청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은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ntp.or.kr](http://www.gntp.or.kr)) 다운로드

구분	구분	제출서류	수량	서식번호
1	공통	◦ 신청서	1부	1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5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제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6
4		◦ 수혜기업 연구개발역량 조사표	1부	7
5		◦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19~21년도)	1부	-
6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1부	8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8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제재정보확인서(참여연구원, 기업)	1부	10
9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증	1부	11
10	장비연계 기술개발	◦ 장비연계 R&D 사업계획서	1부	2
11	장비연계 시제품제작 I	◦ 장비연계 시제품제작 I 사업계획서	1부	3
12	장비연계 시제품제작 II	◦ 장비연계 시제품제작 II 사업계획서	1부	4

□ (세부내용) [2022년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수혜기업 모집 통합공고\(Click\)](#)

□ (문의처) (재)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에너지센터

부서(팀)	성명 / 직위	연락처	이메일
향노화바이오팀	이휘섭 선임연구원	055-259-3022	hwiseop@gntp.or.kr
	방지영 연구원	055-259-3024	jj632@gntp.or.kr

**2**

**2022년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2차 기업지원 모집**

- **(사업개요)**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
- **(지원대상)**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및 참여기업(기관)
  -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
    - \* 대기업은 지원 불가능
- **(사업기간)** 2021. 3. 1. ~ 2022. 12. 31.(22개월)
  - 지원기간 : 과제선정 후 협약일 ~ 2022. 12. 31.
    - \* 소급적용 가능(사업기간 내 진행된 건)
-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금액	기업부담 (현금)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선박 관련 특구사업자들은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따라 수해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 가입 추진</li> <li>-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특례 관련 활동 전에 중기부 장관이 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책임보험에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가입</li> <li>○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책임보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간보다 초과하는 기간으로 연장</li> <li>○ 책임보험은 특구사업자별 가입금액의 50%를 지원하고, 금액은 최대 15백만원으로 함</li> </ul> </li> </ul> </li> <li>○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와 상관없이 상시접수</li> </ul> </li> </ul>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건당(최대) 15,000천원 (VAT제외)</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지원금액의 17% 이상 기업부담 (VAT는 기업 별도부담)</td>	1건당(최대) 15,000천원 (VAT제외)	지원금액의 17% 이상 기업부담 (VAT는 기업 별도부담)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금액	기업부담 (현금)
실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해상 실증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상 실증을 위해 무인선박의 육상 이송에 필요한 운송 경비 지원</li> <li>◦ 무인선박의 해상 진·회수 시 필요한 장치 임차 비용 지원</li> <li>◦ 해상 실증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의 유류비용 등 지원</li> </ul> </li> </ul> </li> <li>○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와 상관없이 상시접수</li> </ul> </li> </ul>	1건당(최대) 10,000천원 (VAT제외) *예산소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액의 17% 이상 기업부담 (VAT는 기업 별도부담)
시제품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증 선박에 대한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를 통한 무인선박 제품 고도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제품제작을 위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 지원(기업 내부인건비 제외)</li> <li>◦ 제품 고급화를 위한 기자재 제작비, 디자인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li> </ul> </li> </ul> </li> <li>○ 특이사항 : 연구개발(R&amp;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자는 동일 및 유사내용 지원불가</li> </ul>	1건당(최대) 60,000천원 (VAT제외) *예산소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액의 17% 이상 기업부담 (VAT는 기업 별도부담)
시험인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구사업자에 대한 무인선박 기자재 및 무인선박 시험 인증 지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선박 기자재 및 부품의 국내외 장비사용 및 시험 비용 지원</li> <li>◦ 무인선박 기자재 및 부품의 국내외 선급 및 성능인증 비용 지원</li> </ul> </li> </ul> </li> <li>○ 특이사항 : 연구개발(R&amp;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의 경우 R&amp;D과제 내 포함내용 제외</li> </ul>	1건당(최대) 10,000천원 (VAT제외) *예산소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액의 17% 이상 기업부담 (VAT는 기업 별도부담)
특허 출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선박 관련기술 및 기자재 PCT출원 등 IP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li> </ul> </li> <li>○ 특이사항 : 지식재산권 출원 최대 2,000천원/ 등록 최대 1,000천원 지원, 연구개발(R&amp;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의 경우 R&amp;D과제 내 포함내용 제외</li> </ul>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등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전시회 참가는 전시회 참가비(등록비, 부스비 및 설치비 포함), 장치비 지원</li> <li>◦ 마케팅활동 중 체제경비에 대한 지원불가, 해외항공권 기준 편도 또는 왕복 총액의 50% 지원</li> <li>◦ 바이어초청은 항공비총액 또는 편도 50%(증빙제출 필수), 숙박비(증빙제출 필수) 지원</li> <li>◦ 마케팅 활동에 대한 통역비(통역원 이력서 및 지급 증빙제출 필수)지원</li> </ul> </li> </ul> </li> <li>○ 특이사항 : 연구개발(R&amp;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의 경우 R&amp;D과제 내 포함내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회 참가 등 해당년도 사업기간 기 진행된 건 소급 적용 가능</li> </ul> </li> </ul>	1건당(최대) 5,000천원 (VAT제외) *예산소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액의 17% 이상 기업부담 (VAT는 기업 별도부담)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금액	기업부담 (현금)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사업화 전략 수립 및 컨설팅 지원</li> </ul> </li> <li>○ 특이사항 : 수행기관(특허전문)에서 직접 지원, 연구개발(R&amp;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의 경우 R&amp;D과제 내 포함내용 제외</li> </ul>		

(신청기한) '22. 2. 14(월) ~ '22. 3. 4(금)

(신청방법)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 이메일(kyhship@gntp.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세부내용) [2022년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2차 기업지원 모집 공고\(Did\)](#)

(문의처) (재)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센터

부서(팀)	성명 / 직위	연락처	이메일
무인선박팀	류민규 연구원	055-259-3612	mingyu@gntp.or.kr
	김용호 연구원	055-259-3614	kyhship@gntp.or.kr

### 3 | 글로벌 IT시장개척단 온라인 화상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사업개요)** 아제르바이잔(바쿠무역관), 벨라루스(민스크무역관) 기업 간 1:1 비즈니스 화상상담회 개최

- 참가기업 제품 시장성 조사 및 국외 프로모션(홍보) 활동 등

**(참여대상)** 경남 SW융합클러스터 지원기업, 경남소재 IT/SW 중소기업

**(사업내용)** 온라인 지역별 1:1 비즈니스 기업 화상 상담회 개최

- 상담시기 및 지역

지역(무역관)	상담시기
아제르바이잔 - 바쿠무역관	2022.04.04.(월) ~ 2022.04.08.(금)
벨라루스 - 민스크무역관	2022.04.11.(월) ~ 2022.04.15.(금)

- 주요내용 : 해외 현지바이어 모집 및 화상상담회 개최, 참가기업 제품 시장성 조사 및 평가, 제품 홍보활동, 현지 바이어와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시장 현황에 관한 정보 공유 등 지원

**(신청기한)** 2022년 3월 1(화) 18시까지

**(신청방법)**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 이메일(jkim@gntp.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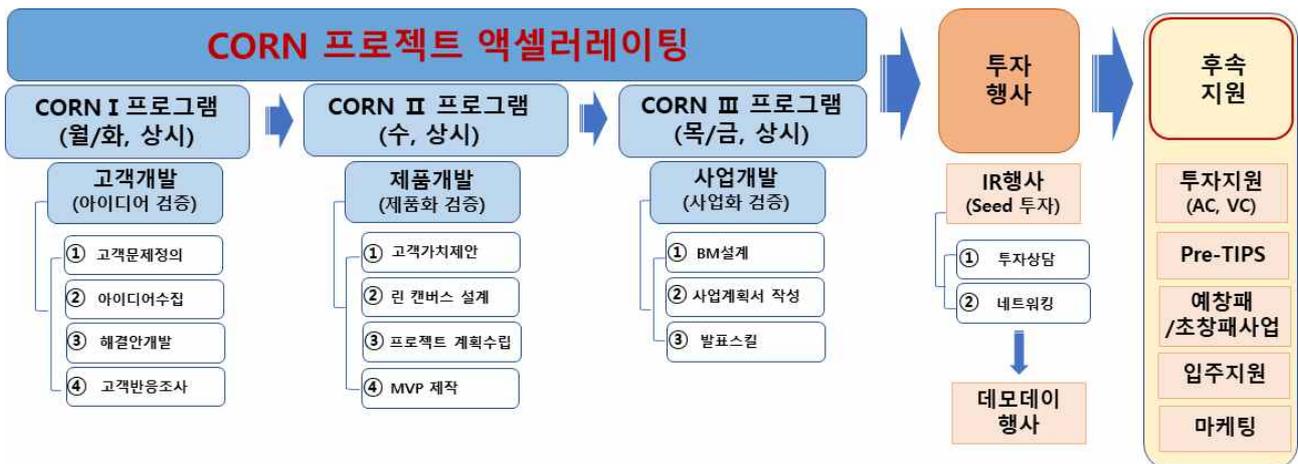
**(세부내용)** [글로벌 IT시장개척단 온라인 화상상담회 참가기업 모집\(Click\)](#)

**(문의처)** (재)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부서(팀)	성명 / 직위	연락처	이메일
ICT융합사업팀	김진 연구원	055-259-5076	jkim@gntp.or.kr

## 1 2022 CORN 프로젝트 액셀러레이팅 참여자 모집

- (사업목적) 창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 (모집대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지원혜택) 아이디어 검증, 전문가 멘토링, 투자행사 참여 등
- (지원내용) 아이디어 사업화 검증, 제품 및 사업개발 창업역량강화
  - CORN I 프로젝트 : 고객개발(아이디어 검증)
  - CORN II 프로젝트 : 제품개발(최소기능제품 확인)
  - CORN III 프로젝트 : 사업개발(사업화 검증)
- (신청기한) 상시접수
- (운영절차)



- (세부내용) CORN 프로젝트 홈페이지 ☞ [www.kcorn.kr](http://www.kcorn.kr)
- (신청페이지) 2022 CORN 프로젝트 신청하기(Click)
- (문의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팀(055-291-9314)



# 우리와 함께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어 주시겠어요?

## CORN 프로젝트 컨설턴트 모집

Customer **O**riented **Re**novation  
고객지향혁신

### CORN 프로젝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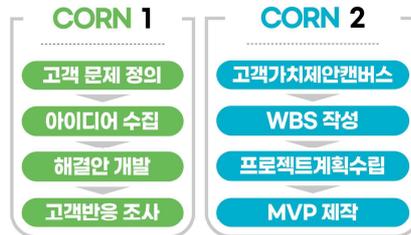
스타트업이 필수 학습해야 할  
창업방법론을 바탕으로  
고객의 진짜 문제와 해결책을  
찾아주는 프로그램



※ 센터를 통한 컨설턴트 활동 수행 시 수당 지급

**모집대상** 창업방법론 컨설턴트 활동에  
관심있는 누구나

**활동내용** CORN 프로젝트 단계별 작성지도



### 신청방법 **kcorn.kr**

※ 신청 시 1번 항목에 <컨설턴트 지원>이라고 작성  
※ CORN 1, 2 프로젝트를 필수참가 후 컨설턴트 역할 수행

- STEP 1 CORN 1, 2 프로젝트 신청
- STEP 2 프로젝트 수행
- STEP 3 컨설턴트 참관(2-3회)
- STEP 4 컨설턴트 실습(2회)
- STEP 5 컨설턴트 체크
- STEP 6 컨설턴트 활동

문의 TEL. 055)291-9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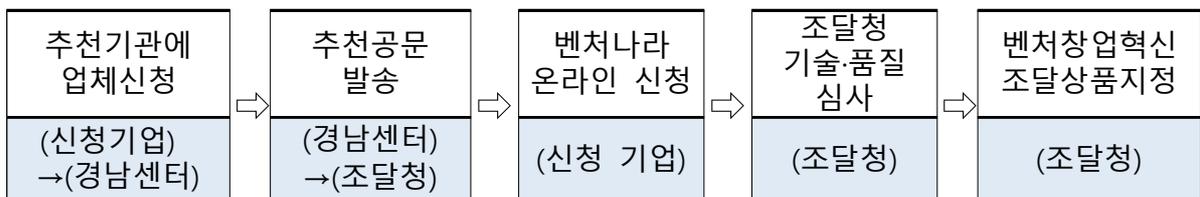
## 2 2022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상품 추천 기업 모집

- (신청대상)**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물품 직접 생산 및 주문가 상표부착생산(OEM)방식 생산하는 기업
- (신청품목)**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신기술 및 융복합 기술관련 물품 서비스
- (상품분야)**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군 총 8개 분야 해당제품(완성품 기준)  
\* 기계,재료/전기,전자/정보,통신/화공,섬유/생명,식품/공예,기타/환경,에너지/지식,SW
- (제외대상)**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 지정절차



- (신청기한)** '21. 3. 2(수) ~ 4. 22(금)
- (기관추천)** 추천기관 접수처에 요구 신청서류 제출하면 가점 2점 부여
- (신청방법)**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모집 페이지\(Click\)](#)
- (문의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서부운영팀(055-291-9382)

- (사업개요)** 경남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보증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신경남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개업일이 2021.12.31.일 이전이고 최근 90일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보증을 받지 않은 기업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0점~1,000점)
  - ※ 정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과 중복신청 가능
- (지원규모)** 연간 1,000억 원
- (지원내용)**
  - 업체당 1천만원
  - 보증기간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0.8%
  - 경남도에서 최초 1년간 이자와 보증료 지원
- (신청기한)** 2022. 1. 25. ~ 한도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신청 (<https://gnsinbo.or.kr>)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 2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 (사업개요)** 코로나19피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
- (지원대상)** 2021.12.27.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받은 업체 중 개인신용평점 745점~919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제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 특별융자’ 또는 ‘희망대출’ 을 지급받았거나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을 지급받은 기업은 제외
- (지원규모)** 전국 3조 8,000억원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업체당 1천만원 (대환자금 1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0.8%(고정)
- (신청기한)** 2022. 1. 24 ~ (한도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시중은행 앱으로 비대면신청
  -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자 기업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신청 (<https://gnsinbo.or.kr>)
- (문의처)** 국민은행 1588-9999, 기업은행 1588-2588, 농협은행 1661-3000, 신한은행 157-8000, 우리은행 1588-5000, 하나은행 1588-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88-6200,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 3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 도모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자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영리사업자)
  - 협동조합기본법 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
- (지원규모)** 전국 450억원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 보증기간 5년 이내
  - 보증비율 100%(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80%), 보증료율 연 0.5%(고정)
- (신청기한)** 2018. 2. 22 ~ (한도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신청 (<https://gnsinbo.or.kr>)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4****경상남도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보증**

- (사업개요)** 경남지역 내 조선·해양기자재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조선업종 경영애로 해소 및 육성 도모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경남지역에서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Track1 :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 Track2 :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접수마감)
- (지원규모)** 연간 250억 원
- (지원내용)**
  - 같은 기업 당 재단 보증금액 최대 8억 원 이내
  - 보증기간 6년 이내(3년 일시상환 혹은 3년 거치 3년 매월 분할상환)
  -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0.4%
- (신청기한)** 2021. 6. 21 ~ (한도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신청 (<https://gnsinbo.or.kr>)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 5 |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사업개요)**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도 악화로 금융애로를 겪는 중·저신용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 ②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0~839점)
    -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구 개인CB등급 기준 4~10등급)
  - ③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수급기업 (22.1.24 개정)
    - ※ 소기업은 제외, 개인사업자에 한해 지원
  
- (지원규모)** 전국 1조 원
  
- (지원내용)**
  - 본 건 20백만원 이내
  - 보증기간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0.4%
  
- (신청기한)** 2021. 8. 2 ~ (한도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신청 (<https://gnsinbo.or.kr>)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 1 | 서유럽 미래모빌리티 무역사절단

- (추진배경)**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인 스페인은 최근 EU집행위의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방침에 따라 글로벌 전기·수소차 벨류체인 육성 추진
- (지원규모)** 도내 유망 자동차부품 중소·중견 기업 10개사
- (파견 지역 및 일자)** 스페인 마드리드 / '22년 6월 초
- (지원내용)** 편도 항공 운임비 및 전문 1:1 동시통역, 유럽권 전기·수소차 바이어 1:1 상담 주선 등
- (신청 시기 및 방법)** 3월 中 / (온라인)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 (문의처)** KOTRA경남지원단 박서영 대리(☎ 055-290-0612)
  - 이메일 : [seoyeong.park@kotra.or.kr](mailto:seoyeong.park@kotra.or.kr)

## 2 | 중국 미래차 자동차부품 온라인 무역사절단

- (추진 배경)** 중국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2030년 탄소정점 액션플랜'에서 "2030년까지 사용하는 교통수단에서 신에너지차의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하면서 자동차 업계는 신에너지차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지원규모)** 도내 유망 자동차부품 중소·중견 기업 10개사
- (파견 지역 및 일자)** 중국 베이징, 창춘 / '22년 6월 말
- (지원내용)** 1:1 온라인 상담 주선, KOTRA BuyKorea 특별관 제품 홍보, 전문 동시 통역 등
- (신청 시기 및 방법)** 3월 中 / (온라인)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 (문의처)** KOTRA경남지원단 박서영 대리(☎ 055-290-0612)
  - 이메일 : [seoyeong.park@kotra.or.kr](mailto:seoyeong.park@kotra.or.kr)

## 1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해결·상담해 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지원규모) 기업당 2건 이내(2,0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지식재산 창출지원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특허	특허맵(일반)	9,000천원 이내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8,000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맵(일반)	9,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개발	16,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목업	6,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	6,000천원~9,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 개발	9,000천원 이내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14,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 개발	6,000천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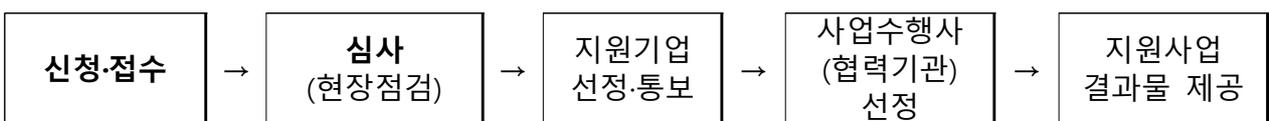
- (신청기한) 2022. 2. 7(월) ~ 수시접수(연중)
- (신청방법) RIPC 사업관리 시스템([www.ripic.org/pms](http://www.ripic.org/pms))
- (세부내용) 2022년도 중소기업IP바로지원 신청 시스템(Click)
- (문의처) 경남지식재산센터(055-210-3087)

## 2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 (사업개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생존력 제고
- (지원대상) 기술을 보유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의 중소기업
- (지원규모) 기업당 1건
- (지원내용)

IP나래 (맞춤형 IP컨설팅)		지원금액
<b>IP 기술전략</b> 유망기술 도출 IP 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b>IP 경영전략</b> IP 인프라·조직 구축 IP 자산구축 IP 사업화 전략 IP 브랜드·디자인 경영	전체 17,500천원 이내

### (선정절차)



- (신청기한) 2022. 2. 14.(월) ~ 2022. 3. 15.(화)
- (신청방법) RIPC 사업관리 시스템([www.ripc.org/pms](http://www.ripc.org/pms))
- (세부내용) 2022년도 IP나래프로그램 신청 시스템(Click)
- (문의처) 경남지식재산센터(055-210-3084~5)

##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시설설비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

- (사업개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일시적 자금난 해소 및 시설투자 증대에 기여
-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 (지원규모) 정책자금(10,000억 원) 용자 및 이차보전(0.75~2.0%, 325억 원)
- (지원내용) 금융기관 용자 및 이차보전 지원
  - 경영안정자금(업체당 최대 10억 원), 시설설비자금(업체당 최대 20억 원), 특별자금(업체당 최대 40억 원) 용자승인<sup>1)</sup> 및 이차보전 지원
  - 1) 금융기관의 대출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와는 별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용자가 불허 또는 축소될 수 있음)
- (신청기한) 2022. 1. 6.(목) ~ 자금 소진 시
- (신청방법) 협약 금융기관<sup>2)</sup> 및 보증기관<sup>3)</sup> 전국지점으로 방문 신청
  - 2) 금융기관(15개사) : 경남, 농협, 국민, 부산, 신한, 우리, 제일, 기업, 하나, 산업, 씨티, 대구, 수협, 새마을, 신협
  - 3) 보증기관(2개사)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세부내용) [「2022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Click)
- (문의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기업통합지원센터(055-230-2901~3)

□ (사업개요) 경상남도 대표 쇼핑몰 'e경남몰' 확대 운영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비접촉 거래 선호 및 유통업계의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 경상남도 대표 쇼핑몰 'e경남몰'을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에서 2021년 7월 1일부터 본격 지원 및 확대 운영하여 도내 우수상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 기회 제공

□ (사업계획)

- (입점 자격요건 완화) 농·축·수·임산물뿐 아니라 가공품, 지역특산물, 지역문화체험상품 등의 제품도 입점 가능토록 자격요건을 완화함
  - 1차 농·축·수·임산물 :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
  - 가공품 : 경상남도 산 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10% 이상 함유된 제품으로 도내에서 생산한 제품
- (홍보·마케팅 활성화)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경남도 대표 쇼핑몰로 자리매김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온라인 판로 개척을 본격적으로 지원
- (3월 프로모션 진행) 2022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e경남몰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며, 10% 자체 할인을 진행할 업체만을 참여대상으로 모집 중(할인내용 : 10% 할인 및 최대 10,000원 적용)
- (이용 편의성 증대) 전용앱 출시를 통해 e경남몰의 소식을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전달하고, 전반적인 구매 과정에 편의성을 제공

□ (문 의 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055-230-2963)

**3****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

- (사업개요)** Digital(디지털), Network(네트워크),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 청년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 및 경제활동 지원
- (지원대상)** 도내 5인 이상 사업장 및 참여청년
  - 참여기업 : 도내 소재한 5인 이상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이 7년 미만인 스타트업 기업
  - 참여청년 : 2022.1.1.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 (모집지역)**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 (지원내용)** 참여기업 및 청년에게 ①인건비(청년 1명당 180만원)지원, ② 직무교육 지원, ③인센티브 지원
- (신청기한)** '22. 2. 23.(수) ~ 3. 22.(화)
- (세부내용)**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Click)
- (문의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055-212-6771)

#### 4 |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이음사업

---

- (사업개요)** 경남전입을 희망하는 타 시도 청년들과 도내 유망 기업 간의 일자리 연결로 지역정착 지원과 청년유입 활성화
- (지원대상)** 도내 5인 이상 사업장 및 귀환청년
  - 참여기업 : 도내 소재한 5인 이상 중소기업·중견·벤처기업
  - 귀환청년 : 2022.1.1.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이면서, 모집 공고일 1년 이전부터 타 시·도(경남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 (모집지역)**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
- (지원내용)** 참여기업 및 청년에게 ①인건비(청년 1명당 180만원)지원, ② 직무교육 지원, ③인센티브 지원
- (신청기한)** '22. 2. 21.(월) ~ 3. 20.(일)
- (세부내용)**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이음사업\(Click\)](#)
- (문의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055-212-6772)

## 5

## 고졸자-선도기업간 희망사다리 일자리사업

- **(사업개요)** 도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와 현장실습 선도기업간 일자리 지원을 통한 실습과 취업을 연계 지원
  - **(지원대상)** 현장실습 선도기업 및 고졸자
    - 현장실습 선도기업 : 현장실습 참여기업\* 중 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선도기업 요건(현장실습 훈련시간, 실습 여건 및 고용환경, 일정 규모 근로자 재직 등) 충족기업
- \* 현장실습 참여기업이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학과) 3학년 학생이 수업일수 1/3범위(약3개월) 이내에서 전공과 관련된 직무 능력을 기업 현장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업
- 고졸자 : 2022년 1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도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모집지역)** 창원시, 사천시, 함안군
  - **(지원내용)** 참여기업 및 청년에게 ①인건비(청년 1명당 180만원)지원, ② 직무교육 지원, ③인센티브 지원
  - **(신청기한)** '22. 2. 21.(월) ~ 3. 20.(일)
  - **(세부내용)** [고졸자-선도기업간 희망사다리일자리사업 공고\(Click\)](#)
  - **(문의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055-212-6772)

- **(사업개요)** 도내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고용환경을 갖춘 「경남형 청년 친화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도내 기업의 청년층 채용 확대 및 일·생활 균형 기업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대상)**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 선정대상 : 경상남도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청년일자리 확대,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정착, 고용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관련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
- **(지원내용)** 참여기업 및 청년에게 ①근무환경개선지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추가고용장려금 지원, ②직주거안정지원무교육 지원, ③기타 행사 및 홍보 서포터즈 운영
- **(신청기한)** '22. 2. 21.(월) ~ 3. 11.(금)
- **(세부내용)**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모집 공고\(Click\)](#)
- **(문의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055-230-2944)

## 7 |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사업

---

- (사업개요)**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소규모 사업장 노무 컨설팅 및 노동법 교육을 통한 노동권의 보호 증진
-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개인, 50인 미만 사업장, 출자·출연기관 등
  - 노동상담 : 도내 주소지를 둔 개인 및 기관  
(진정서 작성, 권리구제 지원 포함)
  - 소규모 노무컨설팅 : 도내 소재한 50인 미만 사업장, 도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
  - 주52시간제 컨설팅 : 도내 소재한 300인 미만 사업장
  - 노동법 교육 : 도내 소재한 노동조합, 사업장, 도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
- (지원내용)** 도내 노동자 및 기업(기관)에 ①노동상담(진정서 작성, 권리구제 포함), ②소규모 노무컨설팅, ③주52시간제, ④노동법 교육 무료 지원
- (신청기한)** 상시 신청 가능
- (세부내용)**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신청서식\(Click\)](#)
- (문의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055-212-6772)

## 1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 (사업개요)** 창원시의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창원형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독자적 기술 개발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창원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집중 육성
- (지원대상)** 창원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 아래의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구 분	세 부 기 준
① 기업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원시 중소기업</li> <li>-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li> </ul>
② 기업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li> </ul>
③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매출액 30억 원 이상 (21년 기준)</li> <li>-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 제조업에 해당되는 기업</li> <li>■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소비재 기업은 매출액 7억 원 이상 (21년 기준)</li> <li>-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J582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li> <li>-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10, C11, C13, C14, C15인 소비재 제조업</li> </ul>
④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히든챔피언 선정기업</li> <li>■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2항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K 금융 및 보험업은 지원 제외</li> <li>■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li> </ul>

- (지원규모)** 14개사 이내
- (지원내용)** 시제품 개발을 위한 재료비 및 제작비 지원, 국내외 성능인증 및 시험평가비 지원 등 기술개발을 위한 종합 지원
- (신청기한)** 2022. 2. 15.(화) ~ 3. 11.(금)
- (신청방법)** 창원기업지원단([bizsos.cwip.or.kr](http://bizsos.cwip.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055-716-7783)

## 2

## 소재부품장비 핵심뿌리기술 육성 지원사업

- (사업개요) 소부장·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과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 (지원대상)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소부장·뿌리산업 중소기업
- (지원규모)

구분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한도	기업부담금	비고
1	전문기업 맞춤형 지원	6개사	50,000천원	총비용의 20%	
2	컨설팅 지원	10개사	5,000천원 내외	-	수시

### (지원내용)

구분	지원분야	프로그램명	세부프로그램	비고
1	전문기업 맞춤형 지원	기술개발	① 시제품제작 ②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③ 시험분석 ④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최대 50,000천원
		공정개선	⑤ 공정 최적화·자동화	최대 20,000천원
		디지털융합	⑥ 제품 디지털 설계 지원 ⑦ 온라인 마케팅 지원	최대 10,000천원
2	컨설팅 지원	정부사업 컨설팅	정부공무사업 신청을 위한 컨설팅 지원	
		전문기업 지정 컨설팅	소부장 전문기업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신규 지정 컨설팅	

※ 전문기업 맞춤형 지원은 2가지 이상 선택하여 패키지 지원 진행

- (신청기한) 2022. 3.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창원기업지원단([bizsos.cwip.or.kr](http://bizsos.cwip.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055-716-7782)

### 3 | 2022년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사업개요) 창원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지원대상) 창원시 본사 소재 중소기업
- (지원규모) 10개사
- (지원분야)
  - (시제품제작) 기술자립화·국산화 및 고도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 (성능시험평가) 시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능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제품제작 지원</li> <li>- 시제품제작을 위한 시제품 재료비 및 제작비 지원</li> <li>· 성능시험평가 지원</li> <li>- 개발 시제품의 국내외 성능인증 및 시험평가비 지원</li> </ul>	10개사  기업 당 최대 30,000천원 (부가세 제외)
과제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 지원금 + 기업부담금(지원금의 20%) + 회계정산비용</li> <li>· 지원금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 완료 후 지급가능(사후정산)</li> </ul>	

※ 기술수준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번호	구분	지원유형	비고
1	수출확대	· 수출유망제품 기술개발 및 해외판매	
2	기술우위	· 기존 국내 생산제품의 개선방안 요구 (경량화, 품질·성능개선, 콤팩트化 등)	
3	국산화 대체	· 해외 수입 제품의 국산화 기술개발 요청	
4	전략기술	· 시제품 개발 및 아이디어 상품개발 등	
5	구매요구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제품개발 의뢰	

- (신청기한) 2022. 2. 18(금) ~ 2022. 3. 15(화)
- (신청방법) 창원기업지원단([bizsos.cwip.or.kr](http://bizsos.cwip.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055-716-7785)

#### 4 | 2022년 제조공정개선 지원사업

- (사업개요) 창원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생산성 및 제품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창원 소재 본사 중소기업
- (지원규모) 3개사 내외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생산시간 단축, 비용절감,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비·설비비용</li> <li>- 공정개선 관련 시스템 도입 및 설비비용 등 지원</li> <li>· 시험분석·컨설팅</li> <li>- 공정 최적화 분석(시뮬레이션), 공정설계 및 컨설팅, 자동화 장치 설계/해석 등 지원</li> </ul>	3개사 기업 당 최대 20,000천원 (부가세 제외)
과제기간	· 협약 후 최대 6개월 이내	
지 원 금	· 총사업비 = 지원금 +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20% 이상)	

※ 기술수준별 차등지원

- (신청기한) 2022. 2. 25(금) ~ 2022. 3. 22(화)
- (신청방법) 창원기업지원단([bizsos.cwip.or.kr](http://bizsos.cwip.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055-716-7785)

## 5 | 방산중소기업 기술강화 지원사업

- (사업개요)** 기술자립화를 통한 창원형 방산중소기업 육성 및 관내 중소기업 방산분야 진출 지원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 (지원대상)** 창원시 소재 방산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 예정기업 (본사나 공장이 창원 소재 중소제조기업(SW업 포함))

### (지원규모)

지원분야	주요 내용	지원규모
방산/보안관련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역설계 지원</li> <li>· 방산제품(부품)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li> <li>· 시험/평가 및 인증지원</li> </ul>	6개사 내외 (기업당 15백만원 이내)
방산중소기업 사업화 패키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 지원</li> <li>· 기 개발제품 고급화 지원(첨단기술 접목 등 품질향상)</li> <li>· 기 개발제품 표준화·규격화 지원</li> <li>· 시험평가, 인증 및 성능(체계)시험 지원</li> <li>·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특허 출원/등록 등 지원</li> </ul>	3개사 내외 (기업당 28백만원 이내)

※ 상기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기한)** ~ 2022. 3. 11.(금) 17: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세부내용)** 2022년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wip.or.kr](http://www.cwip.or.kr)) 지원 사업안내 「방산중소기업 기술강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참조
- (문의처)** 창원산업진흥원 방위항공산업지원팀(055-716-7712)

## 6

## 항공부품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사업개요) 항공부품 기술개발/해외시장 진입 및 인력창출 등 항공부품 산업분야 강소기업 육성

(지원대상) 창원시 항공부품 중소기업 및 항공부품분야 진출 희망 중소기업

(지원규모)

지원분야	주요 내용	지원규모
기술개발	· 항공부품 개발 및 치공구 제작 지원	5개사 내외 (기업당 35백만원 이내)
사업화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 및 장비활용 지원 ·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제공 · 장비활용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 지원 · 설계S/W 성능개선 · 항공인증 취득 및 갱신, 성능시험평가 ·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상기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기한) ~ 2022. 3. 14.(월) 17:00까지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세부내용) 2022년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wip.or.kr](http://www.cwip.or.kr)) 지원 사업안내 「항공부품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참조

(문의처) 창원산업진흥원 방위항공산업지원팀(055-716-7712)

## 7 | 첨단(경량)소재 기업육성 사업

- (사업개요)** 첨단소재 부품 관련 기업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투자촉진 및 기술 수준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 창원시 소재 첨단소재 관련 기술개발 및 제조업체
- (지원규모)** 기업니즈를 반영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지원분야	주요 내용	지원규모
기술지원(필수)	· 시제품제작, 제품 고급화	4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시험분석	· 제품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	
사업화 지원	· 디자인 개발, 양산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 상기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기한)** ~ 2022. 3. 14.(월) 17: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세부내용)** 2022년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wip.or.kr](http://www.cwip.or.kr)) 지원 사업안내 「첨단(경량)소재 기업육성 사업」 모집공고 참조
- (문의처)** 창원산업진흥원 방위항공산업지원팀(055-716-7713)

## 8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 (사업개요)** 수출 시작단계 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향상, 수출활동 촉진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 유도
- (지원대상)**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수출 초보기업」 직전년도 수출액 미화 100만불 미만
-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연 1회)
- (지원내용)**

구분	사전진단&컨설팅(필요시)	수출역량별 맞춤형 지원(+해외마케팅사업)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진단&amp;컨설팅 지원</li> <li>- 시장조사&amp;거래선 발굴</li> <li>- 수출전략수립</li> <li>- 수출애로 해결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진단(1~2단계) 및 단계에 부합 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li> <li>※ 수출기반구축단계(1단계), 전문가활용 수출시장개척단계(2단계)</li> <li>◦ 직전년도 수출 100만불 미만 중소기업 대상</li> <li>◦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li> </ul>
지원 프로그램	사전진단(1~2단계, 현장방문) 시장조사(필요시)	창원산업진흥원 수출프로그램 선택형 지원 (국내전시회, 해외전시회, 해외지사화, 수출보험, 해외마케팅 통합홍보물, 언택트 온라인 마케팅, 해외 민간네트워크 연계 바이어 발굴, 바이어초청 및 수출계약지원, 외국어 통·번역, 수출전문가)
수출 프로세스	①무역업고유번호신청, ②시장조사&거래선발굴, ③바이어&계약체결(FTA관세특례), ④결제방법 &수출요건확인, ⑤수출승인&수출요건확인 ⑥수출물품조달&무역금융, ⑦수출검사&포장, ⑧운송계약&운송보험, ⑨수출통관제도, ⑩수출물품선적, ⑪수출대금회수&보험제도, ⑫관세환급활용 ⑬기타(클레임해결 등)	
	수출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신청기한)** 2022. 2. ~ 3.(예정)
- (신청방법)**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 및 경상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필요시 내방접수도 가능)
- (문의처)** 창원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055-716-7732)

## 9 수출강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개요)** 창원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원형 수출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 수출주도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창원시 수출시장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수출 강소기업」직전년도 수출액 미화 100만불 이상
-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연 1회)
- (지원내용)** 창원시 산업별 수출 강소기업 지정 및 패키지지원

구분	사전진단&컨설팅(필요시)	수출역량별 맞춤형 지원(+해외마케팅사업)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진단&amp;컨설팅 지원</li> <li>- 시장조사&amp;거래선 발굴</li> <li>- 수출전략수립</li> <li>- 수출애로 해결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역량(Level 1~3단계)진단 및 패키지 지원</li> <li>※시장개척단계(L1)→수출단계(L2)→수출확대단계(L3)별 종합적인 해외마케팅 운영 프로그램 선택가능</li> <li>◦ 직전년도 수출 100만불 이상 중소기업 대상</li> <li>◦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li> </ul>
지원 프로그램	수출단계별(Level 1~3)진단, 현장방문 수출컨설팅(필요시) 시장조사(필요시)	창원산업진흥원 수출프로그램 선택형 지원 (국내전시회, 해외전시회, 해외지사화, 수출보험, 해외마케팅 통합홍보물, 언택트 온라인 마케팅, 해외 민간네트워크 연계 바이어 발굴, 바이어초청 및 수출계약지원, 외국어 통·번역, 수출전문가)
수출 프로세스	①무역업고유번호신청, ②시장조사&거래선발굴, ③바이어&계약체결(FTA관세특례), ④결제방법 &수출요건확인, ⑤수출승인&수출요건확인 ⑥수출물품조달&무역금융, ⑦수출검사&포장, ⑧운송계약&운송보험, ⑨수출통관제도, ⑩수출물품선적, ⑪수출대금회수&보험제도, ⑫관세환급활용 ⑬기타(클레임해결 등)	
	수출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신청기한)** 2022. 2. ~ 3.(예정)
- (신청방법)**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 및 경상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필요시 내방접수도 가능)
- (문의처)** 창원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055-716-7732)

- (사업개요) 창원시 수출 판로 확대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상시 지원으로 기업 수출역량 강화
- (지원대상)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연 1회)
- (지원내용) 창원시 산업별 수출 강소기업 지정 및 패키지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내역	지원 한도	모집규모	신청 접수
1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국내전시회 지원(중복지원 불가) 부스임차료 60%~80% 이내 *온라인 전시회 개최 시 변경 가능	3,000	약22개사	매일 (~25일)
2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전시회 지원(중복지원 불가) 부스임차료, 장치료, 편도항공료 *온라인 공동관 시 변경 가능	5,000	약12개사	
3	해외마케팅 통합 홍보물 제작지원	홍보샘플, 외국어 홈페이지, 카탈로그, 동영상,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등 총사업비의 70%이내	5,000	약17개사	
4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단계별(진입-발전-확장)참가비의 80% 이내, 1사 2무역관 이내 지원	3,000	약14개사	
5	언택트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지원	온라인 외국어 카탈로그, 전자상거래(온라인), 홈쇼핑, 화상회의, 수출시장 다변화 시장조사	5,000	약9개사	
6	창원시 수출기업 해상 항만물류비 지원	국제운송비, 창고비(보관료, 작업료), 수출국 내륙 운송비, 견본품 및 수출관련 서류 운송비	5,000	약9개사	

※상세내용은 진흥원/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시스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신청기한) 2022. 2 ~ 12.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 및 경상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필요시 내방접수도 가능)
- (문의처) 창원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055-716-7735)

**참고****지원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기 관 명	홈페이지 주소	대표번호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a href="http://www.mss.go.kr/gyeongnam">www.mss.go.kr/gyeongnam</a>	055-268-25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a href="http://www.moel.go.kr/busan">www.moel.go.kr/busan</a>	051-860-19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a href="http://www.kosmes.or.kr">www.kosmes.or.kr</a>	055-212-135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 href="http://www.semas.or.kr">www.semas.or.kr</a>	051-469-4680
경남신용보증재단	<a href="http://www.gnsinbo.or.kr">www.gnsinbo.or.kr</a>	1644-2900
기술보증기금	<a href="http://www.kibo.or.kr">www.kibo.or.kr</a>	1544-1120
신용보증기금	<a href="http://www.kodit.co.kr">www.kodit.co.kr</a>	1588-6565
(재)경남테크노파크	<a href="http://www.gntp.or.kr">www.gntp.or.kr</a>	1688-3360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a>	055-256-2700
한국무역보험공사	<a href="http://www.ksure.or.kr">www.ksure.or.kr</a>	055-286-9394
중소기업중앙회	<a href="http://www.kbiz.or.kr">www.kbiz.or.kr</a>	055-281-2305
창원상공회의소	<a href="http://changwon.korcham.net">changwon.korcham.net</a>	055-210-3000
KOTRA	<a href="http://www.kotra.or.kr">www.kotra.or.kr</a>	055-290-0602
경남지식재산센터	<a href="http://www.ripc.org/changwon">www.ripc.org/changwon</a>	055-210-3081~5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a href="http://www.gnepa.or.kr">www.gnepa.or.kr</a>	055-212-6760
경남문화예술진흥원	<a href="http://www.gcaf.or.kr">www.gcaf.or.kr</a>	055-230-8600
(재)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a href="http://gibf.or.kr">gibf.or.kr</a>	055-310-9223
창원산업진흥원	<a href="http://www.cwip.or.kr">www.cwip.or.kr</a>	055-716-77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